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1. 12.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연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월 20만원” 한도를 추가 하여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조례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1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②신고포상 금액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로 하며, 1인·1단체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 “②신고포상 금액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로 하며, 1인·1단체에
월 2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

※ “월20만원”을 삽입 함.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②항에 “월 20만원”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②신고포상 금액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로 하며, 1인·1단체에 월 2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제18조제 항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9외 위반 행위 중 가, 나,의 행위로 제한된다. ② 신고포상 금액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로 하며, <u>1인·1단체에</u> <u>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u>	제1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제18조제 항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9외 위반 행위 중 가, 나,의 행위로 제한된다. ② 신고포상 금액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로 하며, <u>1인·1단체에</u> <u>월 2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u> <u>수 없다.</u>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의료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4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봉투 판매소"라 한다)에서 별표 1의 수수료 기준액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를 구입하여 이를 폐기물에 부착·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할 경우 음식물전용 봉투에 담지 않고 별도의 방법으로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하거나, 배출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별표 8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에 기준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추가하여 변경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⑧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절차 등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 또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제8조(재활용품 수집 장려) ① 시장은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에 현장 및 선진 처리시설 등에 대한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에서 보유한 인력 또는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울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청소업무의 효율성 검토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와 물량

2. 대행 구역·기간

3. 수집·운반·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수량 및 사양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서를 발급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종량제봉투판매에 준하여 봉투판매소에서 판매된 별표 6의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ℓ 당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에 반입·처리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한다.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할 때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내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법 제17조 제3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장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이 1일 50ℓ 이하 발생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시장이 지정한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음식물 전용 봉투, 재사용 봉투, 공공용 봉투, 매립용 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음식물전용 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매립용 마대에는 불연성 폐기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분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반투명 흰색을 기준으로 하되 10ℓ, 20ℓ는 옅은 녹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로 하고 크기 등의 규격은 환경부의 표준규격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봉투용량 중 3ℓ, 10ℓ, 20ℓ 봉투는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봉투색깔은 일반용 봉투와 달리 제작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구미시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미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⑥ 시장은 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광고주와 별도계약에 의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 판매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별도 청소 일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대형폐기물스티커는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시장은 봉투 판매소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내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봉투대금을 고의로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⑦ 봉투판매소는 폐기물 배출자가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읍·면·동의 반장
3.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월 120ℓ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에서 지급 가능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 별표 10과 같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구미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신고포상금) 시장은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지와 소재지를 구미시로 한정한다.

제19조의2(신고요령) ① 제19조에 따른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의 신고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오염행위자의 성명, 나이, 인상착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차량을 이용하여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량의 종류 및 색깔 등을 기재하고 가능하면 증거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해당신고건에 대한 증거물, 사진, 비디오 녹화물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제18조제2항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9의 위반행위 중 가, 나,의 행위로 제한된다.

② 신고포상 금액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로 하며, 1인·1단체에 월 2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지급 순서는 신고접수 순서에 따른다.
3. 신고 유효기간은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1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익명 신고 및 불법 행위자를 알지 못할 경우
3. 영리 및 기금조성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원활한 폐기물 행정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민간협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 시의원, 학계, 환경단체, 여성단체, 폐기물관리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④ 위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촉한 위원에게는 현장 및 선진 전문시설의 확인을 위한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 지도
2.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와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제작·사용 중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업 종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행 신청 내용	폐기물의 종류			
	대행신청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행신청 지역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				
대행지정 업 체	업 체 명		업 종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행업체 대상지역				
폐기물의 종 류		폐기물량	톤/일	
대행지정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illegible]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종별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종별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일시적 다량폐기물		1톤 미만	15,000원		주 방 용 품	식탁	6인이상	5,000		
			1톤 초과 100kg마다	1,500원 추가				6인미만	4,000		
			5톤미만	75,000원				썰크대	1쪽	3,000	
가 구	장농	폭120cm이상1 쪽	15,000		교жат상		대형(4인이상)	2,000			
		폭120cm미만1 쪽	10,000				소형(4인미만)	1,000			
	문갑,화장대	모든규격	3,000		쌀통		모든규격	2,000			
	장식장	길이1m이상	6,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4,000			
		길이1m미만	4,000				높이1m미만	2,000			
	서랍장	4단이상	4,000		전기(압력)밥솥		모든규격	2,000			
		4단미만	2,000		전자렌지		모든규격	3,000			
	책장	1m이상 (폭또는높이)	4,000		믹서기,분쇄기		모든규격	1,000			
		1m미만(")	2,000		식기(세척)건조 기		인공건조(동력)	4,000			
	신발장	모든규격	2,000				자연건조(무동력)	2,000			
구 류	책상	양수(대형)	5,000		전자후라이팬		모든규격	2,000			
		편수(소형)	4,000		TV	25인치 이상	5,000				
	캐비닛	모든규격	4,000			25인치 미만	3,000				
	화일캐비닛	4단이상	3,000		비디오	모든규격	2,000				
		3단이하	2,000		TV.오디오 케이스	모든규격	3,000				
	옷걸이	모든규격	2,000		가 전 제 품	오디오	폭또는높이1m이상	5,000			
	의자	모든규격	2,000				“ 1m미만	3,000			
							스피커1쪽당	2,000			
				쇼파	4인용이상	5,000		냉장고	500ℓ 이상	8,000	
	3인용이하	3,000			300ℓ 이상	6,000					
1인용	2,000		300ℓ 미만		4,000						
침 대 (메 트 리스 포함)	더블,퀸사이즈	15,000		가 전 제 품	에어컨,온풍기	264㎡형이상	8,000				
	싱글	10,000				66㎡형이상	5,000				
매트리스	더블,퀸사이즈	8,000				66㎡형미만	3,000				
	싱글	5,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4,000					
탁자	모든규격	3,000			높이1m미만	2,000					

종별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종별	품 명	규 격	수수료	비고
가 전 제 품	오락기	높이1m이상	10,000		기 				

【별표 2】

생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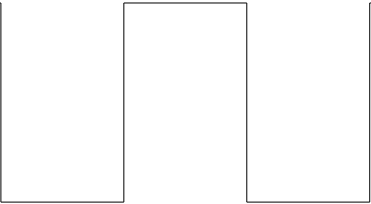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배출일(시간)
1. 종 이 류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 (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2.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3. 병 류	- 음료수병, 기타 병 - 농약병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은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수 있음 - 물로 행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4. 고 철 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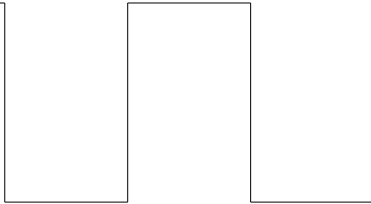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배출일(시간)
5. 플라스틱류	- PET병 - 합성수지 용기류(일반 가정용 생활용품류) - 스티로폼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과일, 생선상자 등을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행구어 배출 -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 감량화지침(환경부고시제95-90호)에 의하여 제조자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렌지, 퍼스날 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업자에게 배출 -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PP)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6. 폐형광등 및 필름류	- 폐형광등 - 필름류 포장재	- 배출시 깨어지지 않도록 보관하여 외피(포장재)를 벗겨서 배출 - 배출 시에는 해당 읍면동의 폐형광등 전용 회수함에 배출 - 깨어진 형광등은 분류하여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농축산품류등 필름류포장재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름류 포장재만 담아서 배출 - 1회용비닐봉투는 별도 분리배출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배출일(시간)
7. 대 형 폐 기 물	가 구 류 , 주 방 용 품 , 가 전 제 품	-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기준에 의한 스티커 부착 후 배출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8. 음 식 물 쓰 레 기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 비닐, 병뚜껑, 젓가락 등 이물질 을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배출	배출일 : 토요일, 공 휴일 전날을 제외한 매일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9. 일 반 생 활 쓰 레 기		-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합 되지 않게 하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집 앞에 배출 (문전 수거 원칙)	배출일 : 토요일, 공 휴일 전날을 제외한 매일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 미 시 문 장 종량제봉투(5~10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구 미 시 장 연락처 : 구미시청 청소행정과 (전화 : 480-5233) http://gumi.go.kr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 미 시 문 장 종량제봉투(50~10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 미 시 장 연락처 : 구미시청 청소행정과 (전화 : 480-5233)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 미 시 문 장

종량제봉투(3~20ℓ)

음식물 쓰레기 전용

1.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은 절대 넣지 마십시오.
3.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봉투에 넣어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 미 시 장

연락처 : 구미시청 청소행정과
(전화 : 480-5233)
<http://gumi.go.kr>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 미 시 문 장

종량제(재사용)봉투(10~3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1. 종량제봉투는 저녁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교환 및 환불되지 않는 봉투입니다.

구 미 시 장

연락처 : 구미시청 청소행정과
(전화 : 480-5233)
<http://gumi.go.kr>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불연성마대 제작사양

[앞 면]

[뒷 면]

이 선위는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구미만들기

불연성(매립용) 마대
(20ℓ ~ 30ℓ)

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건설 폐기물
배출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처리대상 쓰레기
깨진 유리, 도자기, 화분, 사기그릇 등
불에 타지 않는 소량의 쓰레기입니다.
3. 이 마대외의 다른 마대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구 미 시 장

연락처 : 구미시청 청소행정과

☎ 480-523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별표 4】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표지판



1. 글씨의 위치는 하단 접견으로부터 표시지름이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한다.
2. 글씨체는 견고딕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137), 녹색(DIC: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643), 녹색(DIC: 643), 검정색, 금색, 흰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5】

종량제봉투 가격표

(단위:원)

종류	봉투가격(원)		비 고
	업소이윤	판매가격	
3ℓ	3	40	종량제봉투가격 산정방법 = ℓ 당처리비용×봉투용량(ℓ)× 봉투수수료자립도(목표치)+ 봉투제작비+판매이익
5ℓ	7	80	
10ℓ	14	160	
20ℓ	28	310	
30ℓ	41	460	
50ℓ	72	800	
100ℓ	145	1,610	
마대 20ℓ	90	1,000	20ℓ (kg)⇒20ℓ (kg)×50원 = 1,000원
마대 30ℓ	120	1,500	30ℓ (kg)⇒50ℓ (kg)×50원 = 1,500원

【별표 6】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이 스티커는 대형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주민센터에 붙여 주십시오 No. 10 - 대형 폐 기 물 ☐ 수수료 일만원(W10,000) ☐ 배출자 성명: [연락처:] ☐ 배출일자: 200 . . . 구미시	이 스티커는 대형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주민센터에 붙여 주십시오 No. 05-040000 대형 폐 기 물 ☐ 수수료 오천원(W5,000) ☐ 배출자 성명: [연락처:] ☐ 배출일자: 200 . . . 구미시																
<table border="1"> <tr> <td>No. 10 -</td> <td>판매소보관용(10,000원)</td> </tr> <tr> <td>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td> <td>성명:</td> </tr> <tr> <td>금 일만원(W10,000)</td> <td>전화:</td> </tr> <tr> <td>구 미 시</td> <td>주소:</td> </tr> </table>	No. 10 -	판매소보관용(10,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성명:	금 일만원(W10,000)	전화:	구 미 시	주소:	<table border="1"> <tr> <td>No. 05-040000</td> <td>판매소보관용(5,000원)</td> </tr> <tr> <td>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td> <td>성명:</td> </tr> <tr> <td>금 오천원(W5,000)</td> <td>전화:</td> </tr> <tr> <td>구 미 시</td> <td>주소:</td> </tr> </table>	No. 05-040000	판매소보관용(5,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성명:	금 오천원(W5,000)	전화:	구 미 시	주소:
No. 10 -	판매소보관용(10,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성명:																
금 일만원(W10,000)	전화:																
구 미 시	주소:																
No. 05-040000	판매소보관용(5,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성명:																
금 오천원(W5,000)	전화:																
구 미 시	주소:																
이 스티커는 대형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주민센터에 붙여 주십시오 No. 03 - 대형 폐 기 물 ☐ 수수료 삼천원(W3,000) ☐ 배출자 성명: [연락처:] ☐ 배출일자: 200 . . . 구미시	이 스티커는 대형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주민센터에 붙여 주십시오 No. 02-080000 대형 폐 기 물 ☐ 수수료 이천원(W2,000) ☐ 배출자 성명: [연락처:] ☐ 배출일자: 200 . . . 구미시																
<table border="1"> <tr> <td>No. 03-</td> <td>판매소보관용(3,000원)</td> </tr> <tr> <td>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td> <td>성명:</td> </tr> <tr> <td>금 삼천원(W3,000)</td> <td>전화:</td> </tr> <tr> <td>구 미 시</td> <td>주소:</td> </tr> </table>	No. 03-	판매소보관용(3,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성명:	금 삼천원(W3,000)	전화:	구 미 시	주소:	<table border="1"> <tr> <td>No. 02-080000</td> <td>판매소보관용(2,000원)</td> </tr> <tr> <td>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td> <td>성명:</td> </tr> <tr> <td>금 이천원(W2,000)</td> <td>전화:</td> </tr> <tr> <td>구 미 시</td> <td>주소:</td> </tr> </table>	No. 02-080000	판매소보관용(2,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성명:	금 이천원(W2,000)	전화:	구 미 시	주소:
No. 03-	판매소보관용(3,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성명:																
금 삼천원(W3,000)	전화:																
구 미 시	주소:																
No. 02-080000	판매소보관용(2,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성명:																
금 이천원(W2,000)	전화:																
구 미 시	주소:																
이 스티커는 대형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주민센터에 붙여 주십시오 No. 01-060000 대형 폐 기 물 ☐ 수수료 일천원(W1,000) ☐ 배출자 성명: [연락처:] ☐ 배출일자: 200 . . . 구미시	- 규 격 : 내부지름 : 6.5cm 외부지름 : 8cm - 재 질 : 특강지 - 글 씨 : 검정색 - 바탕색 : 1,000원 : 노랑색 2,000원 : 주황색 3,000원 : 연녹색 5,000원 : 청 색 10,000원 : 연자주 - 둘레원 바탕색 : 1,000원 : 청 색 2,000원 : 노란색 3,000원 : 녹색 5,000원 : 청 색 10,000원 : 자 주 - 둘레원글씨체 : 흰색																
<table border="1"> <tr> <td>No. 01-060000</td> <td>판매소보관용(1,000원)</td> </tr> <tr> <td>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td> <td>성명:</td> </tr> <tr> <td>금 일천원(W1,000)</td> <td>전화:</td> </tr> <tr> <td>구 미 시</td> <td>주소:</td> </tr> </table>	No. 01-060000	판매소보관용(1,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성명:	금 일천원(W1,000)	전화:	구 미 시	주소:									
No. 01-060000	판매소보관용(1,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성명:																
금 일천원(W1,000)	전화:																
구 미 시	주소:																

【별표 7】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1)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2)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됨.
- 2)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 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5)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6)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가. 처리업소는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나. 처리업소는 매월 시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NO : 읍 · 면 · 동 년 번 (보관용)

[illegible]

담당자	담 당	읍.면.동장	결 재

[illegible]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담당 귀하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와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2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3	3	3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4)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		30	30	30
5)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6)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다. 법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300	500	700
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흘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300	500	700
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300	500	700
아)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200	300	500

자) 그 밖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경우	400	600	1,000
(4) 의료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00	400	600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400	600	800
(3)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 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 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 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 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 분한 경우	500	700	1,000
나)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 분한 경우	400	600	800
다)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 반하여 처리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 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수탁받은 폐 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400	600	800

라. 법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9호	500	700	1,000
마.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0 20 50	20 30 70	30 50 100
사.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아.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자.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300	600	1,000
차. 법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카.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3호	100	200	300
파. 법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 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하. 법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 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
거.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너.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더.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3호			
1)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수집·운반한 경우		300	500	700
2)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나) 운반비·처분비·재활용비 또는 운반·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비 및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 (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 또는 재활용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폐기물 수집·		500	700	1,000

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나)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300	500	700
마)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한 내에 사후정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4)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말한다)		500	700	1,000
5) 수집·운반능력,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				
가)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나)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	500	1,000
러.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며.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4호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	500	600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700	1,000	1,000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버.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서.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6호	50	70	100
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7호	100	100	100
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9호	300 100	300 200	300 300
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3항제8호	50	70	100
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2	100	200	300
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6호	300	600	1,000
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9호	50	70	100
허.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0호	50	70	100
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1호	100	100	100
노.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6호의2	1,000	1,000	1,000
도.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로.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모.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100	100	100
보.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100	100	100
소.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100	200	300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오.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100	100	100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와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1호	300	300	300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2호	300	300	300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이 아닌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3호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가) 객실과 객실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50	100	200
나) 객실과 객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30	50	100
다) 객실과 객실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10	30	50
라)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5	10	30
2)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가) 영업장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	50	100	200
나) 영업장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목욕장	30	50	100
3)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	100	200	300

(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3]에 따른 업종은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가)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0	50	10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매장만 해당한다)	3	5	10	
5)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한 경우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	5	10	30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 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 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업 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 작·배포한 경우			
가)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	5	10	30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50	100	200

라.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 제1호	50	70	100
마.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41조제2항 제4호	50	150	300
바.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 제5호	50	100	300
사.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 제6호	50	100	300
아.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2항 제7호	200	250	300
자.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 제2호	30	50	100
차. 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품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2항 제8호	100	200	300
카. 법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고품연료제품을 공급하는 자	법 제41조제2항 제9호	200	250	300
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 제10호			
1) 재활용지정사업자		200	250	300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파.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제2항 제3호	50	70	100

관 계 법 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및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과태료 부과기준

○ 변경전 : 환경부예규의 부과대상 위반행위 중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제외

<요약>

적용 법	위 반 행 위	부과금액(천원)			비고		
		1 위	차 반	2 위		차 반	3 위
「폐 기 물 관 리 법」	2.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외의 곳에 버린 자 (법 제8조)						
	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0		30		3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70		10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100		150		20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300		500
	마.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		500		700		1,000

10.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시간,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나.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대기환경보전법」에 제외되는 행위에 한 함)	100	200	300
다.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0	50	50

○ 변경 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부과대상 위반행위 전부를 포함하며,
과태료 부과금액 증가

<요약>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차 이 상
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3	3	3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4)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30	30	30
5)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6)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한도

- 지급기준 : 당해 과태료의 50%
- 지급한도
 - 변경 전 : 1인·1단체 월 20만원, 연 50만원
 - 변경 후 : 1인·1단체 월 20만원, 연 100만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50ℓ 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처리

<별표 5>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